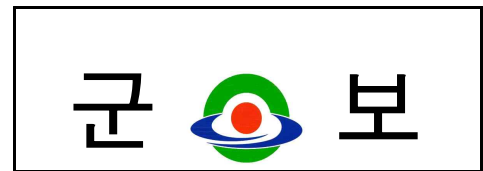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66호 2022. 5. 9.(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예천군 조례 제2500호)
-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01호)

고 시

- 갈구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2-50호)
- 금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2-51호)

예 규

- 예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천군 예규 제2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00호

예천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제5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완료 후,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공개하여 주요 용역사업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및 제2조)

나.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적용범위(제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

다.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제4조)

-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정책연구결과물 공개

라.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제5조)

-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활용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01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부터 제8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제표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예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6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조(「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4조(「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5조(「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조례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인용 조문의 변경(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 제84조)
- 오기 수정

나. 「예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인용 조문의 변경(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7조)

다.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인용 조문의 변경(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라.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인용 조문의 변경(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

마.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인용 조문의 변경(조례 제11조제6항 중 제12조를 제13조로 수정)

고 시

예천군 고시 제 2022 - 50호

갈구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갈구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5. 09.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갈구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갈구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시행하여 노후 주택 정비, 안전·위생 확보, 기초생활인프라, 주민공동시설 및 경관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함

3.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갈구2리 일원

4. 사 업 비 : 1,540.2백만원(국비 1,116, 지방비 389, 자부담 35.2)

5. 주요 사업내용

- 노후주택 정비 :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빈집 철거, 노후 집수리

- 기초생활인프라 :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안전휀스 설치
- 주민공동시설 : 다목적문화마당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 경관시설 정비 : 마을담장 정비,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
- 지역역량 강화 : 마을현장포럼, 사업이해주민교육, 안전재난교육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4년(4년간)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번호	소재지 (예천읍)	지번	지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갈구2리	191-2	대	588	14	김옥동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653-6	
2		197	대	63	59	김서규	갈구2리 197	
3		198	대	1,260	65	김방현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로 91,105동901호	
4		198-1	대	19	8		예천군	
5		204	대	674	25	김운한	갈구2리 204	
6		205-1	대	92	59		예천군	
7		207	대	648	11	백봉사	갈구2리 207	
8		213	대	1418	50	황운석	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239-3	
9		215	대	351	16	김호동	서울 구로구 경인로 382, 122동 405호	
10		215-1	전	836	2	김호동	서울 구로구 경인로 382, 122동 405호	
11		216	대	205	56		평해황씨 내정파 구산소문중	
12		217	대	413	25	권혁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남산평길 16-3, B동 101호	
13		218	전	341	59	김옥연	예천읍 대심리 24-3	
14		219	대	489	30	김해동	인천시 부평구 이규보로 6-11, 3동 202호	
15		223-1	답	4,087	11	권수열	대구시 남구 효성중앙길38, 202동 1006호	
16		223-2	도	30	3	김조한	212	
17		224	답	307	77	안상모	예천읍 양궁로 60-20, 102동 1104호	
18		225-1	전	707	7	정숙희	갈구2리 201	
19		226-1	답	2,892	3	심분자	갈구2리 221	
20		226-2	도	40	9	김성진	예천군 감천면 덕울동 99	
21		226-3	답	20	8		예천군	
22		245-2	도	36	21	김중달	갈구2리 207	
23		245-3	답	74	16	변만구	갈구2리 204	
24		263-3	도	56	26	김영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5-11	
25		246-4	도	86	86		예천군	
26		246-5	답	120	11		예천군	
27		246-6	답	305	59		예천군	
28		247-3	답	149	7		예천군	
29		248-2	도	69	31	김문한	갈구2리 201	
30		248-3	답	104	18		예천군	
31		253-2	도	20	7		예천군	
32		253-5	전	696	271		예천군	
33		254-2	도	50	44		예천군	

번호	소재지 (예천읍)	지번	지 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비 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34	갈구2리	254-5	전	139	46	예천군		
35		261-2	도	13	8	예천군		
36		263-3	답	38	6	예천군		
37		265-2	도	76	67	예천군		
38		265-3	도	30	15	예천군		
39		265-5	전	145	82	예천군		
40		270-2	도	95	50	국	농림부	
41		270-3	답	502	17	예천군		
42		282-1	도	29	9	예천군		
43		287-2	도	56	54	이연이	갈구2리 326	
44		287-3	전	414	105	예천군		
45		306	도	635	353	국	농림부	
46		326	묘	2,737	87	권옥환	용문면 죽림동	
47		336-3	전	503	40	권도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39번길 33	
48		336-4	대	324	35	권도진	용문면 하금곡동 464	
49		337-1	천	514	35	예천군		
50		342	전	450	86	최환오	갈구2리 342	
51		343-2	대	460	16	이상숙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231	
52		343-5	창	540	20	정수하	예천읍 대심리 425-1(로얄맨션 다동 601호)	
53		344-1	답	586	36	이영춘	서울 송파구 가락로31길 18, 107호	
54		344-6	답	19	3	예천군		
55		355-3	천	609	146	안형우	서울 광진구 자양동 644 로얄동아A 102-1401	
56		356	구	320	61	안형기	서울 광진구 독섬로 687, 나동 202호	
57		356-3	구	219	21	예천군		
58		357	구	929	148	이수암	갈구2리 395	
59		360	전	1,471	10	김순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5	
60		361	전	452	16	최정량	갈구2리 352	
61		361-1	전	1,161	84	김형익	갈구2리 97-13	
62		375	구	18,562	540	국	농림부	
63		375-1	구	1,107	116	국	농림부	
64		375-5	구	3,722	23	국	농림부	
65		375-7	구	1,361	14	국	농림부	
66		375-10	구	309	178	국	농림부	
67		381	도	767	338	국	건설부	
68		381-1	도	705	111	국	건설부	
69		382	도	516	178	국	건설부	

번호	소재지 (예천읍)	지번	지 목	면적(m ²)		토지소유자		비 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70	갈구2리	384	도	575	266	국	건설부	
71		385	도	407	197	국	건설부	
72		386	도	466	73	국	건설부	
73		387	도	704	48	국	건설부	
74		388	도	2,648	918	국	건설부	
75		389	도	625	89	국	건설부	
76		392	구	4,031	63	국	농림부	
77		393	구	3,560	30	국	농림부	
78		394	천	11,575	537	국	건설부	
79		394-5	천	2,894	201	국	건설부	
80		395	도	665	95	국	건설부	
81		산41-2	임	1,281	32	이순이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487길 24	
82		산41-3	임	405	160	이순이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487길 24	
83		산44-2	임	1,587	464		예천군	
84		산47-2	임	932	305		예천군	
85		산52-4	임	39	3		예천군	
86		산55-1	임	468	248		예천군	
87		산58-3	임	2,576	565		예천읍	
88		산58-4	임	1,643	292		예천군	
89		산61-1	임	401	109		예천군	
90		산62-1	임	460	168		예천군	
91		산64-1	임	173	63		예천군	
92		산65-1	임	513	205		예천군	
93		산66-1	임	363	117		예천군	
94		산67-1	임	349	72		예천군	
95		산68-1	임	1,877	494		예천군	
96		산70-1	임	212,331	180		예천권씨 성주공파 용문면 종중	

9.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 붙임 시행계획서와 같음(시행계획서 게재 생략)

고 시

예천군 고시 제 2022 - 51호

금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금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5. 09.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금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금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시행하여 노후 주택 정비,
안전·위생 확보, 기초생활인프라, 주민공동시설 및 경관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함

3. 위 치 : 예천군 개포면 금리 일원

4. 사 업 비 : 1,531백만원(국비 1,072, 지방비 385, 자부담 74)

5. 주요 사업내용

- 노후 주택 정비 :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빈집 철거, 노후 집수리
- 안전·위생 확보 : 위험 축대 정비, 재래식화장실 정비, 보안등 설치 등

- 기초생활인프라 : 마을안길 정비
-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신축
- 경관시설 정비 : 마을담장 정비, 공동어울림마당 조성
- 휴먼케어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클린서비스 등
- 지역역량 강화 : 주민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초청교육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위·수탁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7.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4년(4년간)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개포면 금리	산66	임	3,174	1,586	예천군	공유지				공
2	개포면 금리	산65	임	3,174	53	함양박씨대문중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173				
3	개포면 금리	674	구	21,080	47	농림부	국유지				국

9.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 붙임 시행계획서와 같음(시행계획서 게재 생략)

예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5월 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예규 제23호

예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예천군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3.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군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
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
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
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공직자는 군수
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
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
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신속
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가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군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군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군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

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주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및 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

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징계양정 기준) 군수가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5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 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개발제한 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9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4	공항시설 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6	국방·군사시설 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7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연번	부동산 개발 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8	기업도시개발 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9	마을정비 구역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0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11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제13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12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3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1조의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연번	부동산 개발 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4	혁신지구재생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제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5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 지구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6	물류단지개발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9	산업단지개발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연번	부동산 개발 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20	역세권개발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제13조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2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3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연번	부동산 개발 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24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25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제31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26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27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8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9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30	예비타당성 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1호 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 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1호 하목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 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 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1호 파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1호 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 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1호 하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② 직무관련자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건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직무 대리자 지정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보유자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본인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부동산	유형 [] 토지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건물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취득(예정)일
	소재지	
	지번	지목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 39 -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 본인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4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비용부담자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 신고인 [] 퇴직공무원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sqrt{\quad}$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종결사유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예천군수

(서명 또는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전자우편 [] 전화 [] 방문 [] 기타()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가족 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2. 5. 19.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제1조 ~ 제2조)
-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3조 ~ 제4조)
- 다. 직무관련 부동산 신고대상 업무 지정 및 보유·매수 신고(제5조 ~ 제6조)
- 라.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7조)
- 마.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조치(제8조)
- 바.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9조 ~ 제11조)
- 사.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제12조 ~ 제17조)
- 아. 이해충돌방지 교육, 상담, 자문기구에 관한 사항(제18조 ~ 제20조)
- 자. 위반자 징계양정 기준(제21조)